

## 2025년 직장가입자(근로자)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

- (주요내용)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.
- (연계대상) 일반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
  - \* 연계대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으로 정산
- (제외대상) 공무원·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가입자
  - \* 제외사유: 전입·전출로 인한 국세청자료와 공단 자료 불일치 및 매년 당해 보수인상률 적용 중으로 現 정산방식 유지
- (유의사항)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▶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
- ▶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단에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에 취득 중인 경우
  - \* (예시) 귀속년도 내 건설 본사 및 현장에 이중 취득 등
- ▶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
- ▶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
- ▶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
- ▶ 공단의 보수기준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다른 경우
  - \* (항목) 국외근로소득, 법인대표자 인정상여,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

\*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# ○ 2025년 연말정산 일정

일정	내용
'25년 3월 10일 까지	· 보수총액 신고
'25년 3월 13일 이후	· 간이지급명세서 연계
'25년 3월 17일 ~ 3월 27일	·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 및 미신고건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
'25년 3월 28일 이후	· 연말정산 산출내역 발송 ·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
'25년 4월 15일	·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(일시납)
'25년 4월 16일 ~ 5월 10일	·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(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)
'25년 5월 10일	· 보험료 납부기한

\* 상기일정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